



261 2010. 9. 15()



공 고

2010-572

-----2

2010-573

-----3
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:

:

(309-4071)



[입법예고]

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-572호

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.

2010년 9월 15 일

부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의회 전문위원 보강을 통한 의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정원조정 (안 제2조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621명 ⇒ 620명 (감1명)
 - 의회사무국의 정원 : 13명 ⇒ 14명 (증1명)
- ※ 총 정원은 변동없음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기획감사실, 전화 309-4032, 팩스 309-4019, www.bsbukgu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전문 및 자세한 사항은 북구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[입법예고]

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-573호

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주민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9월 15일

부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의회 전문위원 보강을 위한 구 본청과 의회사무국의 정원 조정에 따라 관리기관별·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원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(안 제2조 관련 별표)
 - 구 본청의 정원 조정 : 409명 ⇒ 408명
 - 의회사무국의 정원 조정 : 13명 ⇒ 14명(행정6급 증1명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기획감사실, 전화 309-4032, 팩스 309-4019, www.bsbukgu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전문 및 자세한 사항은 북구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